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는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 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 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http://maps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11년 1월 2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1년 1월 28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수익증권 10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3 |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4 |
| 1. 명 칭..... | 4 |
| 2. 모집(판매)예정기간..... | 4 |
| 3. 모집(판매)예정금액..... | 4 |
| 4. 펀드 존 속 기 간..... | 4 |
| 5. 분 류..... | 4 |
| 6. 집 합 투 자 업 자..... | 4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4 |
| 1. 주요 투자대상..... | 4 |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4 |
| 3. 수익구조..... | 5 |
| 4. 주요 투자위험..... | 5 |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6 |
| 6. 운용전문인력..... | 7 |
|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 7 |
| I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 8 |
| 1. 수수료 및 보수..... | 8 |
| 2. 과세..... | 9 |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 9 |
| IV 요약 재무정보..... | 10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29조제3호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호 가목에 의한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의 “펀드투자상담사”이면서, 동 규정 제5-13조에 의한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한 자)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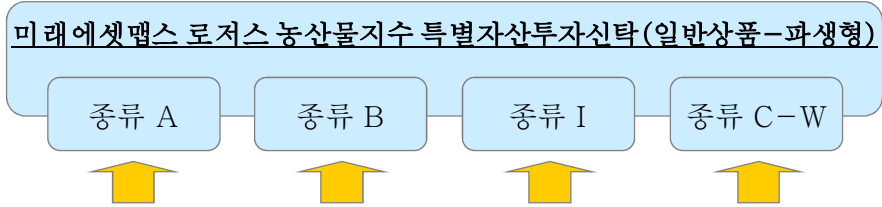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 1.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칭 |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 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62096) (종류 A:62097, 종류 B:62098, 종류 I: 77401, 종류 C-W:97854) |
| 2. 모집(판매) 예정기간 | | 모집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하며,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 3. 모집(판매) 예정금액 | | 10조좌 |
| 4. 펀드 존속기간 | |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주1) |
| 5. 분류 | | 투자신탁, 특별자산,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주2) |
| 6. 집합투자업자 |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 |

주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 구분 | 투자대상조건 및 내용 |
|---------------|---|
| 채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농업관련일반상품·채권·통화나 농업관련일반상품·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 농업관련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하게 됩니다. |

주1)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농업관련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지수수익률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율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보수차감전, 세전이익 수익률 기준)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text{추적오차율} = \frac{|\text{과거1년간 투자신탁의 기간수익률} - \text{과거1년간 벤치마크 기간수익률}|}{\text{과거1년간 벤치마크 기간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5% ~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지수 :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2011년 1월 현재)

- 실물자산중에서 농업관련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선물”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지수.(Commodity Index)
 - * 실물자산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 구성종목수 : 22종목(2011년 1월 기준)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상품(Commodity)를 기초로 하는 해외선물에 주로 투자합니다. 해외 상품선물 거래시 위탁증거금율은 5~15% 수준이며,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은 외화로 평가되는 부분인 위탁증거금을 주요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헤지 전략은 결과적으로 투자신탁자산 중 외화자산의 90%이상을 환헤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투자원본이 매우 적거나 비용이 많이드는 경우 등 환헤지전략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지만 외국 통화화의 노출정도는 비교적 낮게 유지되는 과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참조)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 위험종류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시장위험 | 상품투자 위험 | 상품(Commodity)의 가치는 해당 종목의 수요/공급 및 글로벌 경제성장률, 천재지변, 지리적/정치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과생상품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위험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훨씬 큰 특징이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환율변동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경감을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이로 인한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의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반대로 환헤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 |

| | | |
|--|--|---|
| | | 락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

나. 특수위험

| 위험종류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인덱스투자 위험 |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환율변동(해외투자시), 운용/판매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헤지 등 |
| 인덱스투자 위험 |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은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원본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주로 농업관련 일반 상품선물 등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5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펀드는 위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예시) |
|------|------|---|
| 1 | 매우높음 |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20% 이상인 것)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 | 높음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20% 이하이거나,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조건 하에서 원금보존추구형 투자전략을 갖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 | 보통 | -위험자산에의 최대편입비가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예상되는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의 0% 수준으로서 원금보존추구형 투자전략을 갖는 것) -장내파생상품만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부동산실물(오피스빌딩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 | 낮음 |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 | 매우낮음 |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위험자산 : 주식, 투기등급채권(BB+이하), 상품(Commodity), 상장부동산펀드(리츠:REIT) 등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최대손실가능비율이라 함은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가능비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가능비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운용전문인력(2010.12.31 현재)

| 성명 | 출생 년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집합투자지구수 | 운용자산 규모 | |
| 권정훈 | 1975 | 팀장 | 44개 | 7,162억 | 연세대학교 수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현)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Quant 전략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지구 규모: 해당사항없음 개수: 해당사항없음 |

* 이 집합투자지구의 운용은 Quant 전략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지구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지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1) 연평균수익률(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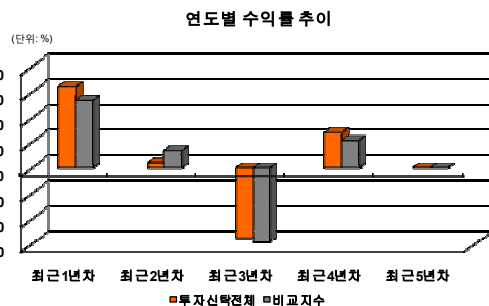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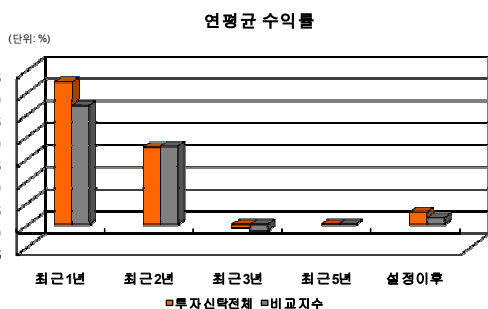
| 연도 (기간) | 최근1년 09.11.16~10.11.15 | 최근2년 08.11.16~10.11.15 | 최근3년 07.11.16~10.11.15 | 최근5년 - | 설정이후 ^{주2)} |
|-----------------------|---------------------------|---------------------------|---------------------------|-----------|---------------------|
| 투자신탁전체 ^{주1)} | 32.19% | 17.39% | -0.78% | - | 2.8% |
| 종류 A | 29.87% | 15.03% | -2.54% | - | 0.82% |
| 종류 B | 30.47% | 15.65% | -2.08% | - | 1.34% |
| 종류 I | - | -4.17% | - | - | -13.7% |
| 종류 C-W | - | - | - | - | - |
| 비교지수 ^{주3)} | 26.82% | 17.62% | -1.42% | - | 1.47% |

주1)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2)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지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Rogers International Agriculture Commodity Index®Excess Return)

(2)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 연도 기간 ^{주1)} | 최근1년차 09.11.16~10.11.15 | 최근2년차 08.11.16~09.11.15 | 최근3년차 07.11.16~08.11.15 | 최근4년차 06.11.16~07.11.15 | 최근5년차 - |
|-------------------------|----------------------------|----------------------------|----------------------------|----------------------------|------------|
| 투자신탁전체 ^{주2)} | 32.19% | 1.97% | -27.55% | 13.89% | - |
| 종류 A | 29.87% | 0.14% | -28.98% | 11.81% | - |
| 종류 B | 30.47% | 0.63% | -28.59% | 12.37% | - |
| 종류 I | - | -8.34% | -33.49% | ^{주3)} | - |
| 종류 C-W | - | - | - | - | - |
| 비교지수 ^{주4)} | 26.82% | 6.68% | -29.24% | 10.58% | - |

주1) 위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입니다.
주2)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3) 운용기간이 표 상단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수익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4)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지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Rogers International Agriculture Commodity Index®Excess Return)



I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지급비율 | | | | 부과기준 |
|----------|--------------------|-----------|--------------------|----------|------|
| | 종류 A | 종류 B | 종류 I | 종류 C-W | |
| 수익증권판매기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기관투자자 등 ㉠) | 랩어카운트투자자 | |
| 선취판매수수료 | - | 납입금액의0.8% | - | - | 매입시 |
|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 환매시 |

주1)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중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인 집합투자업자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순자산총액 기준 지급비율(연간,%) | | | | 비고 (지급시기) |
|-----------|---------------------|---------|---------|---------|--------------|
| | 종류 A | 종류 B | 종류 I | 종류 C-W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연 0.54% | 연 0.54% | 연 0.54% | 연 0.54% | 매3개월 후급 |
| 판매회사 보수 | 보수표 참조 | 연 0.76% | 연 0.03% | 연 0.00% | 매3개월 후급 |
| 신탁업자 보수 | 연 0.03% | 연 0.03% | 연 0.03% | 연 0.03% | 매3개월 후급 |
| 일반사무관리 보수 | 연 0.02% | 연 0.02% | 연 0.02% | 연 0.02% | 매3개월 후급 |
| 기타비용 ㉠) | 연 0.18% | 연 0.18% | 연 0.18% | 연 0.18% | 사유발생시 |
| 총보수·비용 | 보수표 참조 | 연 1.53% | 연 0.80% | 연 0.77% | - |
| 증권 거래비용 | 연 0.48% | 연 0.48% | 연 0.48% | 연 0.48% | -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0.11.15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0.11.1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설정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보수표]

| 종류 A 수익증권 | 지급비율 (연간,%) |
|-----------|---|
| 판매회사 보수 | 최초설정일 ~ 2010년 5월 2일 : 순자산총액의 1.26% 2010년 5월 3일 ~ 2011년 5월 2일 : 1.22% 2011년 5월 3일 ~ 2012년 5월 2일 : 1.18% 2012년 5월 3일 ~ 2013년 5월 2일 : 1.14% 2013년 5월 3일 이후 : 1.10% |
| 총보수·비용 | 최초설정일 ~ 2010년 5월 2일 : 순자산총액의 2.03% 2010년 5월 3일 ~ 2011년 5월 2일 : 순자산총액의 1.99% 2011년 5월 3일 ~ 2012년 5월 2일 : 순자산총액의 1.95% 2012년 5월 3일 ~ 2013년 5월 2일 : 순자산총액의 1.91% 2013년 5월 3일 이후 : 순자산총액의 1.87%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1,000원)

| 구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종류 A | 202 | 624 | 1,071 | 2,309 |
| 종류 B | 234 | 559 | 907 | 1,884 |
| 종류 I | 82 | 255 | 444 | 989 |
| 종류 C-W | 79 | 246 | 428 | 9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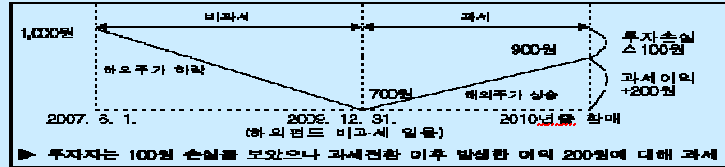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 기간중 발생한 200원의 이익은 비과세기간의 300원의 손실과 상계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 기준가격의 산정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종류간 판매보수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maps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〇〇시 〇〇분 ~ 〇〇시 〇〇분) 중 판매회사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오후 5시 이전 | 오후 5시 이후 |
|----|--|---|
| 매입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 제3영업일 자금납입(5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 제4영업일 자금납입(5시 경과후)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제1영업일 제4영업일 환매신청(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 에 환매대금을 지급 제1영업일 제5영업일 환매신청(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지급 |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 요약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4기 ('10.11.15) | 3기 ('09.11.15) | 2기 ('08.11.15) |
| 운용자산 | 93,928 | 52,764 | 53,808 |
| 증권 | 79,700 | 32,603 | 23,360 |
| 과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4,727 | 10,671 | 30,447 |
| 기타운용자산 | 9,500 | 9,490 | 0 |
| 기타자산 | 2,203 | 920 | -15,571 |
| 자산총계 | 96,131 | 53,685 | 38,237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408 | 213 | 199 |
| 부채총계 | 408 | 213 | 199 |
| 원본 | 102,537 | 74,641 | 53,669 |
| 수익조정금 | 0 | 0 | 0 |
| 이익잉여금 | -6,815 | -21,170 | -15,630 |
| 자본총계 | 95,722 | 53,471 | 38,038 |

| 요약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4기('09.11.16~'10.11.15) | 3기('08.11.16~'09.11.15) | 2기('07.11.16~'08.11.15) |
| 운용수익 | 20,643 | 1,206 | -33,477 |
| 이자수익 | 1,671 | 1,396 | 2,813 |
| 배당수익 | 529 | 94 | 0 |
| 매매/평가차익(손) | 18,424 | -291 | -36,327 |
| 기타수익 | 18 | 6 | 36 |
| 운용비용 | 1,325 | 1,021 | 1,309 |
| 관련회사보수 | 918 | 666 | 789 |
| 매매수수료 | 298 | 272 | 258 |
| 기타비용 | 109 | 83 | 262 |
| 당기순이익 | 19,317 | 184 | -34,787 |

[알림]

"Jim Rogers", "James Beeland Rogers, Jr.", "Rogers",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Agriculture Index Excess Return" 는 Beeland Interests, Inc.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서비스마크이며,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와 "RICI" 는 Beeland Interests, Inc.의 등록 트레이드 마크 및/또는 서비스마크로서 James Beeland Rogers, Jr.가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라이선스의 대상이 됩니다. Jim Rogers/James Beeland Rogers, Jr. 와 이와 유사한 이름들은 James Beeland Rogers, Jr. 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서비스 마크입니다.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과생형)은 Beeland Interests, Inc.("Beeland Interests") 또는 Jim Rogers로부터도 후원을 받거나 보증, 판매 또는 관측되지 않습니다. 또한 Beeland Interests나 Jim Rogers는 이 투자설명서의 정확성이나 완전성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대표하거나 보장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물자산(Commodity)이나 관련 유가증권에의 투자 또는 특히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과생형) 또는 선물에의 투자를 권유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EELAND INTERESTS와 계열사 및 관계자들은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ICI®"), 이 지수의 sub-index 및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자는 자료의 오류, 누락, 중단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미래에셋맵스 로저스 농산물지수 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과생형) 또는 RICI®, 이 지수의 sub-index와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 자가 얻게 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BEELAND INTERESTS와 그 계열사 및 관계자들은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그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RICI®, 이 지수의 sub-index의 사용에 관한 모든 보증을 모두 부인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BEELAND INTERESTS와 그 계열사 및 관계자들은 투자에 따른 어떠한 손실이나 간접적, 법적, 특정한 혹은 필연적인 손실에 대하여 그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한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